

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시범운영 추진계획

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¹⁾ 시범운영 시설로 구립새싹 어린이집이 선정된 바,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추진배경 및 필요성

추진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4항
- 거점형 시간연장 시범운영 어린이집 선정 통보 (보육담당관-13634, 2015.07.20)

추진배경

- 맞벌이 부모를 위해 시간연장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
 - 소수아동 보육으로 인한 혼합보육,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로 진행 미흡
 - 보육교사 근무환경 악화로 인한 전체적인 보육의 질 저하 우려
- 근로형태의 다양화,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이유로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수요 지속적 증가로 체계적인 운영방안 필요

필요성

- 시간연장 아동에게 최적의 보육환경 제공
-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
- 부모의 선택권 제고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 강화
-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등

1)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: 해당 시설 주간보육 아동뿐만 아니라 시간연장보육이 필요한 인근 다른 어린이집 아동을 모집하여 체계적인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

II 현황 및 추진방향

우리가구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현황 (2015. 7월 기준)

구 분	계	국공립	민 간	가 정	직 장	
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(개소)	104	32	25	46	1	
시간연장 운영 어린이집(개소)	61	6	17	37	1	
이용 아동수(명)	284	36	74	169	5	
시간연장 교사수(명)	월급여형	53	6	17	29	1
	수당형	28	4	3	21	-

- 시간연장 지정어린이집은 104개소 중 실제 운영은 61개소(59%)가 운영을 하고 있음
- 이용아동이 2명 이하인 시설은 15개소로 24.5%이고,
- 근무수당형태(원장 또는 담임교사가 겸직)로만 운영하는 시설은 4개 시설로 평균보육아동수는 2.5명임

구립새싹어린이집 현황

- 시설 현황

구분	관리 행정동	주 소	어린이집 특성	원장	정원	현원	정원 충족률	보육 교직원
국공립	사당제2동	동작대로29길 119 극동아파트111동 뒤	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	허은경	91	83	91%	14

- 시간연장반 운영 현황

시간연장반 수	교사수	시간연장반 아동수	비고
1개반	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1명	3명 (만3세 2명, 만5세 1명)	혼합보육

- 새싹어린이집 인근(사당2, 3동)어린이집 33개소 중 시간연장 지정시설은 13개소이나, 실제 운영 시설은 새싹어린이집 포함 8개소(62%)임

추진방향

- 우선 유아(만3~5세)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추후 대상 연령 확대 검토
- 현행 시간연장보육과 병행하여 실시
 - 아동수가 적고 근무수당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 대상으로 실시
 - 시간연장 교사가 있고 보육아동수가 일정 규모 확보된 어린이집은 현행대로 운영
- 아동의 안전 및 부모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
 - 시간연장보육을 위해 아동이 거점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간 인수인계. 이동시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
 -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모가 동의할 경우에만 실시
-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수준높은 시간연장보육 제공

III 세부추진계획

1. 운영계획

대상아동

- 거점 어린이집 주간보육 아동 중 시간연장보육 영·유아
 - 다른 어린이집 주간보육 유아 (※ 영아 및 장애아는 제외)
 - 교사 근무수당 형태로 시간연장을 운영하고, 월 시간연장 총 보육시간이 평균 20시간 미만이거나 시간연장보육 아동이 5명 미만인 시설의 시간연장 보육 아동 (부모동의 필요)
 - 시간연장 미운영 어린이집의 주간보육 아동 중 해당아동의 부모가 거점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희망한 경우
- ※ 해당부모는 '거점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'(별첨 서식 1) 작성·제출

대상아동 확정, 인수인계, 이동 등

- 이용아동 등록 : 일반 어린이집 → 거점 어린이집
 - 일반 어린이집에서 '거점 시간연장 보육 이용 신청서' 등을 첨부하여 거점 어린이집에 이용 개시월 전월 25일까지 대상아동 등록
 - 등록방법은 현행 시간연장 아동 등록방법과 동일

※ 보육통합시스템에 시간연장이동으로 입소등록을 해야 상해 및 배상보험 효력 발생
- 이용아동 이동 방법
 - 일반어린이집은 거점어린이집으로 이용당일 아동현황을 15:00까지 유선으로 통보
 - 일반어린이집에서 직접 거점어린이집에 아동을 데려다 주는 것이 원칙
 - 아동이동방법에 대해서는 거점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이 사전 협의하여 실시
 - ※ 구립어린이집은 통학차량을 미운행하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을 데려다 주는 등 방법 강구
- 아동 인수인계
 - 아동인수인계 시점은 평일 18:00시를 원칙으로 함
 - (※거점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 제공)
 - 인수인계시 일반어린이집 교사 및 거점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의 건강 상태,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고 각각 인수인계서(별첨 서식 2)에 서명
 - 아동의 건강상태 등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을 인수받지 않을 수 있으며, 아동 인수시점부터 거점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
 - 아동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어린이집 교사가 일정 기간 및 시간동안 거점어린이집에서 해당아동을 함께 돌볼 수 있음

세부운영방법

- 운영시간 : 18:00~24:00(평일), 15:00~24:00(토요일)

구 분	평 일	토요일	비 고
인수인계	18:00~18:30	15:00~15:30	
저녁식사	18:30~19:30	-	저녁식은 거점어린이집에서 제공
보육시간	19:30~24:00	15:30~24:00	☞ 보육료산정 기준시간

- 반 구성 : 연령대별로 구성(혼합보육 금지)

※ 단, 시범운영기간 중 예외적 혼합보육 허용하며 연령별 반 편성이 가능할 경우 혼합보육 중지

- 교사 대 아동비율

교사 대 아동비율	만0세아, 장애아포함	만1세~2세반	만3세 이상
원 칙	1 : 3	1 : 4	1 : 5
초과 인정범위	해당없음	1:5명 이내	1:7명 이내

- 연령대별로 시간연장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
 - 심리치료,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
- 보육교사는 별도교사 채용(근무수당 교사 배제)
 -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총 6시간 권장
-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시간연장보육 운영지침에 따름

2. 지원내용

거점어린이집 지원내용 (* 지원조건 : 3개반 이상 운영, 단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유예)

- 교사 인건비 : 100% 지원
 - 80%까지는 복지부 기준(국·시·구비)에 따라 지원하고, 나머지 20%는 시·구비(50:50)로 지원
- 시간연장 프로그램 운영비(시·구비=50:50) : 매월 반당 20만원 지원
 - 시간연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, 교재교구비 등

- 기 타 (시·구비 = 50:50)

- 조리사 수당 : 매월 30만원 지원
- 차량운행비(차량운행시만 지원) : 매월 50만원 지원

【※ 참고 :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지원사항 비교】

구 분	일반 어린이집	시간연장 거점어린이집	비 고
보육료	전액지원	전액지원	정부:시:자치구
교사인건비	- 별도교사 : 80% - 수당교사 : 40만원/월	별도교사 : 100%	- 80% : 현행기준 - 20% : 시50:구50
프로그램 운영비	없음	반당 20만원/매월	시50:구50
조리사 수당	없음	30만원/매월	시50:구50
차량운행비	없음	50만원/매월(차량운행시만 지원)	시50:구50

일반어린이집 관련 사항

- 일반어린이집 아동이 거점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하더라도 일반어린이집의 시간연장 실적으로 인정(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시 해당)

3. 홍보계획

어린이집 대상 홍보

- 구립·민간·가정어린이집 월례회의시 홍보
-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홍보(사당권 소재어린이집 집중 홍보)

일반주민대상 홍보

- (온 라 인) 구홈페이지·SNS 등을 통한 홍보
- (오프라인) 동작구소식지 게재, 옥외전광판, 미디어보드 등 홍보문구 표출, 아파트 반상회,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요청

거점어린이집 자체 홍보

- 학부모에게 사업 설명 및 플래카드 등 부착하여 사업 홍보
- 인근 어린이집 원장들과 사업 협의 및 업무 협조 요청

IV 행정사항

예 산

- 소요예산(1개소, 3개반, 5개월 기준) : 12,920천원

구 분	계	산 출 기 준	비 고
	12,920천원		
인건비 (20%부담분)	5,920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교사(13호봉) 450천원×1명×5개월 • 신규교사(6호봉) 367천원×2명×5개월 	시50:구50
운영비	3,000천원	• 200천원×3개반×5개월	
조리사 수당	1,500천원	• 300천원×1명×5개월	
차량운행비	2,500천원	• 500천원×1개소×5개월(차량운행시 지원)	

- 예산과목 : 영유아보육인프라확충, 보육서비스 향상, 보육사업비(시비보조), 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
- ※ 예산확보 방법 : 보육사업비 > 어린이집 운영지원(자체) 사업비에서 확보 가능

추진일정

- 거점형 시간연장 보육개시 2015.08.01
-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사업홍보 2015.08.01~
- 현황 보고(어린이집→구→시) 매월
- 만족도(학부모, 교사, 원장) 조사 실시 2016. 1 ~ 2월

- 붙 임 1.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서식 1부.
2. 거점형 시간연장 아동 인수인계서 1부. 끝.